

무 역 제 도

가. 개 요

- WTO 가입 이전의 중국의 대외무역은 국영 대외무역공사가 수출입을 주도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운용
-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대외무역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국유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수출입 업무 가능
- 또한, 관세를 매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비관세 무역장벽도 완화하는 등 개방화를 지속
 -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외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대외무역권을 확보한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대외무역권을 확보한 기업에 대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이 낮은 기업 도태
 - 무역거래와 관련한 밀수·자본도피·위장 조세환급·쿼터배정 허가증 불법 매매·위조 상품교역·브랜드 침해 등의 탈법·위법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실시
 - 3년 간 계속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권 취소
-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투자 진출 시 허가받은 생산 제품 및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서만 수출입이 가능한 제한적인 대외 무역권을 부여
 - 외자 기업으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도·소매 등의 유통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음

나. 수입 관세

- 수입관세는 크게 보통세율,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의 4가지 중의 하나를 적용
 -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차등을 두어 최혜국

세율보다 우대적인 성격의 협정 세율 부과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구 방콕협정)이 2006년 9월 1일 발효됨에 따라 '세계 무역기구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시행되어 기존 특혜관세가 대폭 확대

주요 신규 양허품목
변압기·교환기 부분품 등 전기전자제품, 엔진부분품·컴퓨터 부분품 등 기계제품, 압연코일·금속형강 등 철강금속제품, 트럭·자동차 부품 등 수송기기제품

-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2007년 현재 9.8%이며, WTO 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단행할 예정
 - 39.9%('92년 말)→36.6%('93년 말)→35.9%('94년 말)→23%('96. 4)→17%('97. 10)→15.3%('01. 1)→12%('02. 1)→11.0%('03.1)→10.4%('04.1)→9.9%('05.1)→9.8%('07 초)
 - 2007년 1월부터 산업별 평균관세율은 공산품 8.95%, 농산품 15.2%등임.
- 중국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는 '2007년 관세실시방안에 관한 통지'를 통해 2007년 1월부로 폴리에틸렌 등 44개 세목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
 - 딸기, 폴리에틸렌, 기초화장품 등 44개 품목에 한해 최혜국세율을 2006년 평균 10.4%에서 2007년 평균 9.2%로 1.2% 포인트 인하
- ※ 2006년 1,600개 수출입세목을 조정함에 따라 2007년 수출입 세목은 총 7,647개에 달함.
- 소맥, 옥수수 등 4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1~15% 쿼터관세율을 적용하고 2007년 1월 1일부로 석탄, 석재 등 자원류를 포함한 총 309개 세목에 대해 최혜국세율 이하의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 개인휴대 또는 우편 반입된 사치품(골프공, 골프채,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화장품의 수입 관세율을 20%에서 50%로 크게 인상

2007년 개인휴대 우편반입화물 수입관세율

세번	세율(%)	물품명
1	10%	책, 간행물, 교육전용영화,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원본, 비디오 테이프, 금, 은 및 금과 은으로 만든 제품, 식품, 음료, 세 번 2,3,4 및 각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상품
2	20%	방직품, 픽업카메라,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및 기타전기용구, 카메라, 자전거, 손목시계, 시계(부품포함)
3	30%	골프공 및 도구, 고급손목시계
4	50%	담배,술, 화장품

주1 : 피임용품과 피임약의 경우, 해관이 규정한 개인사용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해관규정에 따라 반송하거나 물품수입절차에 근거해 수입통관 및 검역을 실시함

주2 : 고급손목시계는 납세후 가격이 1만 위안 이상인 제품을 가리킴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 중국은 범용기계, 제련설비, 광산기계, 식품기계, 포장기계, 환경설비, 계측기기, 전자통신설비 등 192개 품목에 대한 자국기업의 설비 투자용 제품 수입관세 면세 폐지를 확대
 - 자체적인 생산 설비나 기술 수준으로 생산한 제품의 수요 충족이 당장 또는 가까운 장래에 가능한 설비가 대상
 - 200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그 이전에 인·허가를 취득한 프로젝트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중국 국내기업 투자용 설비 수입의 면세불가 품목 목록은 해외경제정보(OEIS) '자국기업의 설비투자용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 면세 폐지 확대'(2007.4.6)에서 확인 가능
- 중국세관은 새로운 가공무역단모(團耗: 완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량)관리 규정(해관청소 155호령)을 공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
 - 가공무역 계약 건마다 수입재료별로 등기수책을 발급하고 관리
 - 가공제품의 수출 후, 실제 완제품 수출수량과 원재료 사용량과의 관계, 잔존 폐기물과 잉여자재 등을 심사하고, 단모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로 간주하여 관세와 수입 증치세 부과
-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과학기술개발용품 수입세 면세 잠행규정'을 발표해 2007년 2월 1일부로 시행
 - 11차 5개년 계획기간이 끝나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중국 내 생산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과학기술개발용품이 합리적인 수량범위 내 수입될 경우 수입관세와 증치세, 소비세가 면제

다. 수출 관세

- 2006년 10월 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中國國務院關稅稅則委員會)는 제7차 전체회의에서 '수출입상품에 대한 잠정관세율조정통지(調整部分進出口商品暫定關稅稅率的通知)'를 통과시키고 2006년 1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중국은 2007년 수출세 인하 또는 신규부과 등 잠정세율 적용대상을 174개 품목으로 확대
 - 2007년 잠정세율 적용품목은 2006년 11월 1일 발표된 잠정세율 적용대상과 대부분 중복

2007년 잠정 수출관세율

단위 : %

관세율	품목
0	- 동류, 침적동, 알루미늄, 텅스텐 스크랩 등 5개 품목
5	- 석탄, 코크스 및 코크스 유, 원유, 역청광추출원유 등
10	- 인회석, 희토 금속광물, 금속광사 등 광물과 철합금, 무쇠, 강철조각 등 철강제품 -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제품 19개 품목 -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을 수입하는 희토 화합물과 침엽수원목재
15	- 고 에너지소모품, 자원소비품, 오염유발제품의 수출관세를 5%에서 최고 15% 인상 - 구리, 니켈, 전해알루미늄 등 유색금속품목
20	- 주석광과 그 정광

주 : HS code 8단위 품목임.

라. 수입 제한

- 중국은 관세 외에도 수입 허가제 및 쿼터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수입 규제
-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은 오존층 파괴물질,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입허가증 품목, 자동수입허가증 제도 등 3종류가 있음.
 - 오존층 파괴물질의 경우 기존의 3개 품목 83개 세목(HS 8단위)에서 1개 품목 10개 세목으로 축소
 - 화학무기 원료, 방사성 화학물 등 113개 세목에 대해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

수입허가증 관리를 시행

※ 이중사용물질이란 일반품이지만 무기·독극물 생산이 가능한 제품

- 주요 수입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정제유, 천연고무, 식용유, 석탄, 강재, 폐지 등 총 902개 세목에 대해 자동허가증 관리를 시행

— 수출입 허가증 발급기관

- 상무부
- 상무부 15개 항구 사무소
- 30개 지방정부, 14개 계획단열 도시 대외경제무역청(위원회)

— 2007년 중국 상무부는 <자동수입허가관리화물품목>에 대한 조정을 거친 후, 강재와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두 329개 세목의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취소하고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

- 자동수입허가증제도가 폐지되는 세부 품목은 플라스틱원료(HS CODE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8413110000 등 140개), 강재, 강괴(7208100000 등 176개) 등임

—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은 매 건별로 수입허가증을 취득한 후 수입

- 수입허가증은 매매 및 양도가 불가능하고, 유효기간 1년이며 최장 3개월까지 1회 연장 가능

— 수입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기업의 경우 6개월마다 상무부 산하 수입 쿼터 관리국에 수입 계획을 통보하고 당국의 심사를 거쳐 벌크재 등을 수입할 수 있음.

— 현재 수입 쿼터 및 수입 허가증 등에 의한 수량 규제는 단계별로 철폐될 예정이나 WTO 가입 5년 후에도 전체 수입품의 2%인 150개 품목은 여전히 비관세 장벽 유지할 전망임

— 수입 쿼터 관리

- 기계와 전자, 대형 플랜트 설비 및 기술 등 적정 수입은 필요하나 대량 수입시 국내 산업 및 외화 보유에 영향을 주는 상품
- 원유, 석유제품, 양모, 양식, 비료, 농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상품

- 일부 품목의 수입 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최근 '위생'과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한 안전검사와 환경보호 검사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즉 직접적인 수입 규제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마. 수출 제한

- 중국 상무부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2004 수출 허가 품목'(2003년 말)을 제정, 수출 물품을 5개 종류, 52품목으로 구분함.
 - 허가 품목에 속하지 않은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관할 지역 당국의 허가절차를 밟기 전 중앙정부(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수출 허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수출제한 관리 품목

수출 쿼터 관리 품목	- 쌀, 옥수수, 밀, 면화, 차잎, 실크, 석탄, 원유, 석유제품, 희토, 안티몬, 텅스텐 등
수출허가증 관리 품목	- 소, 돼지, 닭 등 육류, 오존층 파괴물질, 탄화규모, 독약 제조 화학물, 전자계산기, 선풍기, 자전거, 오토바이 및 그 엔진 등 - 핵 제품 관련기술, 미사일 관련기술, 컴퓨터 등 807개 세목에 대해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출허가증 관리 시행

- 면화, 원유, 실크 등 41개 품목 375개 세목에 대해 수출쿼터허가증, 수출쿼터 입찰, 수출허가증 관리를 시행
- 수출 허가증 유효기간은 최장 3개월이며 건별로 수출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수출 쿼타는 수입국 수량 제한에 의한 피동적인 관리와 자국제품 수출시장의 안정을 위한 자율적 관리로 분리하여 운용
- 수출 쿼터 관리 대상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석유, 천연가스, 식량 등)
 - 외국시장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 수입국의 수량 제한 요청이 있는 상품(의류)
 - 쌍무협정에 따른 상품

- 수출상품 잠정규정(出口商品暫行辦法, 1992. 12)
 - 방직품의 피동적인 수출쿼터 규제가 2005년 1월부터 전면 취소됨
 - * 쿼터에 대한 입찰 실시(1995년부터)
- － 외국인 투자기업도 쿼터관리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법인을 신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상무부 또는 그 수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수출 쿼터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연간 수출입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2년 연속 세금, 외화, 수출입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없는 기업
 -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기업
 - 쿼터허가증관리와 전매상품의 수출입 업무를 하지 않는 기업

바. 가공무역 보증금

- － 1999년부터 가공무역(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중국에는 주로 임가공료 등의 경비만 지급)에 필요한 물품을 금지, 제한, 비제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 금지물품 :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입 금지 물품
 - 제한물품 : 수입물품의 가격변화가 크고 세관이 관리하기 쉽지 않은 품목
 - 비제한 물품 : 금지와 제한 물품을 제외한 기타 품목으로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 보증과 예치가 불필요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

금지 품목	제한 품목
현옷, 음란서적, 유해물질 및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산업폐기물; 중고 자동차·오토바이 및 주요 부품; 종자, 종묘,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및 항생제 등	에틸렌 등의 플라스틱 원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화섬 단섬유; 면화, 면사, 면직물; 철강제; 설탕류; 콩·땅콩·해바라기·옥수수·참깨 등의 식물성 유지; 천연고무; 양모 등

- － 중국은 경유 등 자원소모성 제품, 동물성 모피 등 환경오염 제품, 일회용 젓가락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 위주의 ‘2007년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2007.4.5)을 발표하고 4월 26일부로 시행
- 이는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 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가공무역금지 품목 105호(2005.12)→63호(2006.9)→82호(2006.11)에 이은 4번째 공고임.

- 가공무역 금지 품목은 총 990개로(투자환경,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 '07.4.5일자 참조) 이중 수출 금지품목이 707개, 수입 금지품목이 222개, 수출입 금지품목이 122개임
 - ※ 2006년 11월 발표된 804개 품목에 137개 품목 금지 추가
 - 2007. 4. 26 이전에 이미 상무 주관부문의 비준을 취득한 가공무역인 경우 해관에 가공무역 등록을 신청하고 계약서 유효기간내에 취급할 수 있으며 기업을 단위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기업은 2008년 4월 5일전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됨.
 - 가공무역금지류 목록에 추가된 품목 중 만기까지 수출을 할 수가 없어 내수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해관총서 재정부상무부인민은행 세무총국 2006년 제52호 공고》 규정을 참고하여 해관세금 납부서일의 전년도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당좌예금 이율로 연체된 세금이자를 납부함.
 - 이번 공고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이 특수하게 감독하는 지역에 해당되며, 본 공고발표 전에 동 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제외함.
 - 본 공고에서 열거한 상품이외에 종식, 양식 등을 위한 수출상품과 종자, 종묘, 종축,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향생제 등을 수입하여 가공무역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가가 금지하는 수입상품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하는 가공무역(예를 들어, 음란서적, 유해물, 방사성물질의 공업쓰레기 등)도 금지함.
 -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에 의거 가공무역방식으로 생산하거나 모방 총기를 수출하는 행위도 금지.
- － 가공무역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수출입 규모, 과거 위법 행위 여부 등에 따라 다음의 4단계로 분리하여 관리
- A 기업: 연간 수출입 실적이 3,000만 달러 이상 또는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상의 대외무역기업과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제품 수출기업(전기 전자 업종인 경우 수출액이 500만 달러이상)으로 다음에 부합하는 기업
 - 기업을 설립한지 2년 이상이며,
 - 최근 6개월 간 밀수 등 위법행위가 없고,
 - 최근 2년 간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 수출입 관련 서류가 사실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수출입활동을 하고,
 - 세관 통과시 상품 검사 면제 협의 후 2년 내에 부실 기록 보고가 없으며,
 - 세관업무 전담자가 지정되고 최근 2년 간 수출입 신고내역의 착오율이 5% 이내이고,

- 보세창고를 운영하며 창고관리 등이 양호한 업체
- B 기업 : A, C, D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및 처음 세관 통관 등록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C 기업 :
 - 1년 동안 2회 이상 불법 및 위법 행위(밀수 제외)가 있거나 탈세액이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인 기업
 - 관세 등의 체납액이 100만 위안 이하이거나 수출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기업
 - 1년 간 수출입 신고내용 착오율이 10% 이상인 기업
 - 기업명의를 무단 대여 또는 타인에게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기업
 - 수출입 활동과 관련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기업
- D 기업 :
 - 2년간 밀수, 탈세액이 50만 위안 이상, 금지물품 수입 기업
 - 수출입 허가증 위조 또는 허위서류 신고 기업
 - 세관관리화물 운반도구에 밀수품 은닉 및 관세 체납액이 100만 위안 이상인 기업
 - 대외무역 허가를 정지 당했거나 취소된 기업
 - 밀수로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

등급별 가공무역 기업 관리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관 리 내 용	· 세관에 전담창구 설치 또는 출장검사 실시 · 은행 보증금 대장관리 면제 · 세관 전산망과 연결 수출입 신고 허용 ·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시 가공무역 등기관관련 서류 우선 발급 · 담보제공 필요시에도 보증서에 의한 통관 허용 · 제한류의 상품을 수입할 때도 보증금 면제	· 일반 세관 관리 제도 적용 · 신규 가공무역 실시 기업	· 담보 제공물의 현금 담보 요구 ·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시 일정비율의 보증금 예치 · 수출입 물품의 중점 검사 및 엄격한 사후관리 실시 · 관할세관 이외 지역의 수출입 신고 불허	· 신규 가공무역 불허 · 수출입 물품에 대한 개장 검사 실시 · 수출입 신고자격, 보세 운송자격 등의 일시 정지 또는 취소 · 관련 부처에 대외무역권의 일시 정지 또는 취소 요청

- － 가공무역을 실시하는 기업은 보증금 대장제도에 따라 관세와 증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래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하여 세관에 제출

- 그러나 A 기업과 B 기업은 보증금 대장제도의 空轉(보증금 대장에 기록만 하고, 현금 또는 보증서가 불필요)제도의 적용을 받아 은행에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서도 필요 없음. C기업과 D 기업은 實轉(관세와 증치세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중국은행이 발행한 보증서 제출 필요)제도의 적용을 받아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함
- D 기업이 2년 동안 D 기업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C 기업으로 재분류되며, C 기업은 1년 동안 C 기업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B 기업으로 재분류
 - B 기업이 A 요건에 부합해도 A 기업으로 재분류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A 기업의 B 기업으로의 분류는 신속하게 이루어짐
- 가공무역 관련제도 다소 완화
 - 규정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1만 위안 이하의 경우 C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기업으로 그 횟수가 전년도 통관횟수의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C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음
 - 종전의 현금 보증 외에 중국은행이 기업 신용, 저당, 질권, 예금 등 담보를 근거로 발급한 보증서도 인정
 - 다만 중국은행에 한정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중국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지 않은 기업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

사. 수출가공구

- 설립 목적과 현황
 - 정부는 수출가공구 입주기업에게 세관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국의 수출가공 무역을 활성화하는 한편, 밀수 억제를 위해 가공무역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위해 2000년 4월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수출가공구를 신설
 - 수출가공구는 국무원 비준사항으로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설립 불가능
 - 현재 중국내 수출가공구는 大連(遼寧), 重慶(重慶直轄市), 和浩特(內蒙古), 秦皇島(河北), 蕪湖(安徽), 西安(陝西), 鄭州(河南), 天津(北京), 天竺(北京), 煙臺(山東), 威海(山東), 昆山(江蘇), 蘇州工業園(江蘇), 南通(江蘇), 無錫(江蘇), 松江(上海), 金橋(上海), 杭州(浙江), 寧波(浙江), 廈門杏林(福建), 深圳(廣東), 廣州(廣東), 武漢(湖北), 成都(四川), 琿春(吉林) 등 58개 지역

－ 보세구와의 구별

- 해외에서 가공구내로 반입되는 원·부자재, 설비에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가공구와 외부간 거래를 수출입 거래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보세구와 비슷
- 그러나 보세구 내에서는 간단한 가공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 운수·창고·무역업체 설립이 가능한 반면, 가공구에는 가공업을 위한 제조업체, 가공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운수업체만이 제한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세구와 차이가 있음

－ 수출가공구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 수출가공구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가공구 가공무역 관리 잠정방법 (2001.4)’에 따라 가공된 모든 제품을 수출한다는 조건하에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
-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관세와 증치세 면제 및 중국 내에서 구입한 기계설비와 원·부자재에 대한 증치세 환급
- 은행의 가공무역 보증금대장 제도 시행 대상에서 제외
- 생산된 제품에 대해 증치세 납부 면제
- 국외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수출 쿼터나 수출허가 면제
 - 다만 수입국이 쿼터 규제를 하는 품목, 화학무기, 고체 폐기물 등은 예외
- 세제우대를 부여받는 품목
 - 생산에 필요한 기기, 설비와 공장, 창고 건설에 필요한 물자
 - 생산에 필요한 (제조용)모형, 수리용 부품
 - 수출가공구 소재 기업이 사용할 사무용품
 - 기업이 가공 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 부품, 포장재료, 소모성 재료
 - 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가공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손실된 재료, 흠이 있는 물건, 폐품 등의 수출시 수출 관세 면제
- 다만, 기업이 사용할 차량, 에너지 소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을 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 징수

－ 수출가공구 입주기업은 투자 목적을 제3국 수출에 두어야 유리

- 수출가공구의 특성상 제3국 수출형 외국인 투자기업은 세관절차의 간편성,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유리할 것이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주된 투자목적이라면 매 건마다 정식 수출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부적절함
- 따라서 초기 투자목적이 제3국 수출형일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내수시장 개척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수출가공구로의 진출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아. 보세구

- 현재 총 15개의 보세구가 설립되었으며 수출가공구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구로 평가
 - 大連, 天津, 青島, 張家港(江蘇省), 上海外高橋, 寧波(浙江省), 福州(福建省), 厦門(福建省), 汕頭(廣東省), 深圳沙頭角, 深圳福田, 廣州, 海口(海南省), 深圳鹽田, 珠海(廣東省)
- 보세구의 주요 기능은 중계무역, 수출가공, 보세창고 등의 운영이며 국외기업 및 국내기업(보세구에 위치하지 않은 중국내 기업)과 자유로운 무역활동 가능
 - 보세구내 기업의 영업범위는 국가가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 취급을 제외하고는 제한사항이 없음
- 보세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세, 허가증 면제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보세구에서 사용할 기계설비, 고정자산, 사무용품, 관리설비 및 가공 수출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부품, 연료, 포장재료(국가가 정한 수입제한 품목 포함)는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세
 - 중계무역 화물은 보세 화물 관리에 따름

전문연구원 김재원(☎3779-6660)

E-mail : jaewonk@koreaexim.go.kr